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573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573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2728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G

2.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황석보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이명현, 이승현

변론 종결2022. 7. 22.

판결 선고2022. 8. 26.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27284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망 B과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11. 2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항소심 계속 중인 2021. 6. 4. B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가액배상 청구금액을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2013. 4. 12.부터 2019. 5.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출하였다(이하 D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9. 6. 30. 기준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은 4,436,711,015원이고,

2020. 8. 25. 기준 합계액은 4,853,561,413원이다.

나. D은행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2019. 7. 31.경 소외 회사 소유의 경북 고령군 E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저당목록에 등재된 기계·기구(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D은행, I 주식회사 및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9. 9. 27.자 양도 및 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D은행은 2019. 10. 4.경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9. 11. 21. B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B에게 공장저당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품')을 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후 B은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담보물 및 물품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담보물 및 물품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근접한 2020. 1. 9. 기준으로 5,385,794,460원(= 이 사건 담보물 5,345,794,460원 + 이 사건 물품 40,00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총 채무액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포함하여 9,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바. B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6. 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은행 앞으로 ①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442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442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7173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9. 8. 22.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448,325,046원을 변제하였고, 2019. 8. 23. 위 가) ①항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 8. 22.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448,325,046원, 근저당권자 기술보증기금인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D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31.경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7.자 양도 및 양수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D은행은 2019. 10. 1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9. 9. 27.자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가 같은 날 접수되어 등록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마)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은 2020. 1. 9. 기준으로 합계 5,345,794,460원으로 평가되었다.

바)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20. 9. 15. ①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배당

1순위인 J(선정당사자)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136,298,386원, ② 임금채권자(채당금)로서 배당 1순위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450,252,700원, ③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당해세)로서 배당 2순위인 고령군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13,181,640원, ④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3순위인 기술보증기금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493,519,995원, ⑤ 신청채권자의 승계인(근저당권)으로서 배당 3순위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3,050,284,817원, ⑥ 신청채권자의 승계인(근저당권)으로서 배당 4순위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1,715,903,354원 중 192,887,651원(11.48%)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근접한 2020. 1. 9. 기준으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은 합계 5,345,794,460원이고(위 배당표는 이 사건 담보물의 경매에 따라 4,336,425,189원을 실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시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더 가까우므로 그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 채권액은 합계 599,732,726원(= 136,298,386원 + 450,252,700원 + 13,181,640원)이며(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2019년 6월경까지 모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배당 3순위 근저당권과 동순위 근저당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액은 493,519,995원이므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상당액과 기술보증기금의 위 채권액을 공제하면 4,252,541,739원(= 5,345,794,460원 - 599,732,726원 - 493,519,995원)이 남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으로 4,252,541,739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9. 6. 30. 기준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인 4,436,711,01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그 차액인 184,169,276원(= 4,436,711,015원 - 4,252,541,739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물과 이 사건 물품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K 앞으로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K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L은 2019. 6. 17. '채권자 K, 채무자 L, 연대보증인 소외 회사, 대여금액 784,315,000원, 변제기한 2019. 6. 24.,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플라스크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공증인가 M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183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② K는 2019. 11. 21. '위 플라스크에 대한 소유권을 일체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 중의 일부인 '플라스크 약 500개'가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의 담보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플라스크 약 500개 외에 에어컴프레샤, 고철, 주물사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이 상이한 점, ②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40,000,000원을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K가 진정한 양도담보권자라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자신의 채권에 전혀 충당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변제에 모두 사용하게 하여 자신의 양도담보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설사 위 양도담보권이 진정한 것이고 그 목적물에 이 사건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K가 위와 같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채권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N에게 2019. 11. 25. 20,000,000원, 2020. 1. 1. 5,000,000원, 2020. 1. 10. 5,000,000원, 2020. 6. 23.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송금 내역 중 2019. 11. 25.자 송금을 제외하면 그 일시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이 지급된 2019. 11. 2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위 송금에 사용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채권 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B은 중고기계매매업자로서 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현장조사까지 하였으며, 원고는

2019. 6. 19.경부터 경비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담보물 등을 경비·관리하면서 이를 반출해가거나 불법점유가 개시되는 것을 방지하여 왔는바,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자력이 약화된 상태이고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유체동산도 경매절차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채무 등을 위한 공동담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대금 전액을 소비·은닉하기 쉬운 현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B이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금액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40,000,000원 × 법정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판사 고종영

판사장성훈

판사최수진

별지